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안 (임이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166

발의연월일: 2024. 12. 31.

발 의 자:임이자·최수진·김성원

이헌승 • 우재준 • 김용태

박성훈 · 김위상 · 김형동

조지연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일하는 방식이 다원화되면서 특수고용직, 플랫폼 종사자 등 기존 '근로자'와 '사용자' 개념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 음.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불 여력이 부족한 경우 현행 노동 관계법만으로 충분히 보호받기 어려운 실정임.

플랫폼 종사자의 경우 퇴직공제와 같은 복지 제도가 미흡하며, 계약 관련 분쟁 발생 시 이를 신속히 해결하기 어렵고, 계약서 미작성 관행 으로 권익 침해의 위험이 높음. 영세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 소규모 사 업장에서 근무하며 복지와 안전 등 근로 여건이 열악하고, 이해 대변 및 소통 체계도 부족한 상황임.

이에 근로자성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노동약자를 국가가 보호 주체로 삼아 실질적인 고충 해결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 적 기반을 마련하고, 현행 노동관계법 보호 체계와 더불어 보호 사각 지대 해소를 위해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체계를 상호보완적으로 구축하여 모든 일하는 사람을 촘촘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노동약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공정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(안 제12 조)
- 나.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노동약자가 계약 관련 분쟁 발생 시 이를 신속히 해결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정(안 제14조)
- 다. 노동약자가 질병, 상해, 실업 등 위기 상황에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회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(안 제17조)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임이자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7165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, 같은 법률안이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할 것임.

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안

- 제1조(목적) 이 법은 국가가 노동약자의 권익 보호, 복지 증진 등을 통해 국민이 가지는 근로의 권리, 행복을 추구할 권리 등을 보장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"노동약자"란 국가로부터 지원 및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 - 1. 다른 사람의 사업에 대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노동 관계 법령에 의하여 보호받기 어려운 사람
 - 2. 「근로기준법」,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 등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장·노무제공 특성, 사업 장의 경제적·사회적 여건 등으로 인해 근로조건의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어려운 사람
 - 3. 제8조에 따른 노동약자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
- 제3조(기본원칙) 국가는 이 법에 따라 노동약자 지원 및 보호 정책을 수립·시행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 다.

- 1. 노동약자가 가지는 「헌법」상 근로의 권리 등이 구현되도록 할 것
- 2. 노동약자가 국가로부터 공정하게 지원·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것
- 3. 다른 법률과 연계하여 노동약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증진되도 록 할 것
- 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동약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, 직무능력 개발,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알선 기능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해야 한다.
 - ② 노동약자는 스스로의 노동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개발하고, 자기발전을 도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- 제5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노동약자의 지원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6조(지원계획의 수립 등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노동약자의 지원과 보호를 위한 계획(이하 "지원 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 - 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 - 1. 노동약자 지원 및 보호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
 - 2. 노동약자 지원 및 보호를 위한 법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
 - 3. 노동약자 지원 및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

- 4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
- 5.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노동약자 지원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노동약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- ④ 그 밖에 지원계획의 수립, 의견수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7조(실태조사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노동약자의 현황, 일하는 환경 및 처우 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.
 -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분야로서 노동약자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를 소관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실태조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8조(노동약자지원위원회) ① 노동약자의 지정 및 노동약자의 지원·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노 동약자지원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노동약자의 지정 및 지원·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동약자를 포함한 이해관계 자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구성・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9조(취업촉진 및 고용안정) 국가는 노동약자의 취업촉진 및 고용안 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 - 1. 노동약자에 대한 일자리 정보제공 및 알선, 전직 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
 - 2. 노동약자의 직무능력 개발에 필요한 훈련과정 개설 및 훈련비 지원
 - 3. 노동약자의 창업 촉진, 사업화, 마케팅 활성화 등 지원
 - 4. 노동약자에 대한 고용창출·유지·조정 등 고용안정 지원
 - 5. 그 밖에 노동약자의 취업촉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사항
- 제10조(복지 증진) 국가는 노동약자의 복지 증진 등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 - 1. 노동약자의 휴게시설ㆍ쉼터 설치 및 복지 물품 지원
 - 2. 노동약자의 생계비 자금 대출 등 생활 안정 지원
 - 3. 노동약자의 질병ㆍ부상에 따른 생활비 및 상병수당 등 지원
 - 4. 노동약자의 사회보험 가입 확산 및 노후준비 지원
 - 5. 노동약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주, 근로자 간 상생협력 지원
 - 6. 그 밖에 노동약자의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한 사항

- 제11조(권익 보호) 국가는 노동약자의 일하는 여건 개선 및 이해 대변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 - 1. 노동약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법률 상담 및 교육 지원
 - 2. 노동약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산업재해 예방 지원
 - 3. 영세사업장에 대한 인사 · 노무관리 체계 구축 지원
 - 4. 노동약자의 일·가정 양립을 위한 장려금·컨설팅·인프라 등 지원
 - 5. 영세사업장에 대한 「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」 제3 조에 따른 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 활성화 지원
 - 6. 그 밖에 영세사업장에 소속된 노동약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사항
- 제12조(표준계약서의 제정·보급 등) ① 국가는 노무제공 및 보수 지급과 관련된 계약(이하 "노무제공계약"이라 하며,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근로계약은 제외한다)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공정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.
 -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노동약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 -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노무제공계약 당사자에 대한 행정적 ·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- ④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의 활용 및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·상담·홍보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- ⑤ 국가,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은 노동약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할 때 서면(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에 의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,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.
- 제13조(보수 미지급 예방) ① 국가는 노동약자가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지 못하는 등의 사례를 예방하고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 - 1. 제3자에게 노무제공에 따른 보수를 예치하는 시스템 도입 · 운영
 - 2. 보수 지급 이행을 보증하는 보증보험 가입 지원
 - 3. 「법률구조법」에 따른 법률구조 지원
 - 4. 그 밖에 노동약자의 보수 미지급 예방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 용노동부렁으로 정한 사항
 - ② 국가는 노동약자에 대한 보수 미지급 예방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·단체 등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 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수 미지급 예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4조(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) ① 노동약자의 노무제공과 관련된 분

쟁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「노동위원회법」 제2조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(이하 "지방노동위원회"라 한다)에 분쟁조정위원회(이하 "분쟁조정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- ② 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약자의 노무제공 관련 분쟁의 조정을 지원하는 공익위원을 둔다. 이 경우 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의 수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③ 제2항에 따른 공익위원은 「노동위원회법」 제6조 및 같은 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노동문제 또는 분쟁조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「노동위원회법」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.
- 1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 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
- 2. 판사·검사·군법무관·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
- 3. 노동관계 업무 또는 분쟁조정활동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 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
- 4. 노동관계 업무 또는 분쟁조정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서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 였던 사람

- 5. 그 밖에 노동관계 업무 또는 분쟁조정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조정담당 공익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
- ④ 제3항에 따라 공익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「노동위원회법」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공익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- ⑤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공익위원 중 3명 이내의 공익위원을 지명하여 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.
- ⑥ 분쟁조정위원회는 노무제공과 관련된 분쟁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으로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.
- 1. 노무제공에 따른 대가 지급에 관한 분쟁
- 2. 노무제공계약 내용의 변경 추가,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분쟁
- 3. 노무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또는 손해의 부담에 관한 분쟁
- 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
-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분쟁을 조정하려는 경우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, 분쟁 당사자 쌍방이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⑧ 조정조서에는 분쟁 당사자와 조정에 관여한 위원이 서명·날인 하여야 한다.
- ⑨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조정조서는 「민법」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.
- ⑩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은 제6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

- 30일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. 다만, 분쟁 당사자들이 합의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-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, 조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노동위원회법」제25조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정하는 규칙으로 정한다.
- 제15조(분쟁조정 지원) ① 국가는 노동약자의 노무제공과 관련된 분쟁의 예방 및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상담, 협의, 조정 등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.
 - ② 국가는 노동약자에 대한 분쟁조정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1 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·단체 등에 필요 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지원 업무을 수행하는 기관, 법인, 단체에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자는 분쟁조정 지원 업무를 수행하면서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수행 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.
 -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 지원, 제3항에 따른 비밀준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6조(경력관리) ① 국가는 노동약자의 경력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.
 - 1. 노동약자의 근무처, 경력, 자격 등에 관한 기록 접수 및 증명서 발급

- 2. 노동약자의 경력정보를 기록 ·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· 운영
- 3. 그 밖에 노동약자의 경력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 부렁으로 정한 사항
-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약자의 경력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③ 국가는 노동약자에 대한 경력관리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1 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·단체 등에 필요 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경력관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7조(공제회 설립 등) ① 노동약자 또는 사용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다음 각 호 중의 어느 하나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제회를 설립할 수 있다.
 - 1. 노동약자인 구성원 간 상호부조
 - 2. 노동약자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 등 지원
 - ② 공제회는 비영리법인으로 하며, 공제회의 설립·운영 등에 관해서는 「민법」 중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공제회(제1항제1호·제2호를 목적으로 「민법」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)는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노동약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
- 1. 긴급한 생활 안정에 필요한 자금의 소액 대부
- 2. 경제적 위험 등에 대비한 자산형성 지원
- 3. 복리후생 증진 및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
- 4. 경력관리 지원, 직무능력 개발, 취업 지원을 위한 사업
- 5. 생애주기 노후준비를 위한 진단, 상담, 교육
- 6. 노동 권익 증진을 위한 교육, 상담, 홍보
- 7.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중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
- ④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공제회 설립과 제3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밖에 공제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⑤ 제3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공제회는 노동약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동약자의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 등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.
-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공제회의 인가 요건 및 절차, 공제 사업의 운영 및 감독, 비용의 지원기준과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8조(공제회 지원 특례)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, 제20조제2항, 제20조의5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은 노동약자의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기업·공제회 간 협력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

제17조에 따른 공제회를 지원하는 사업에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의5제3항에 따라 조성된 대·중소기업상 생협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.

- 제19조(노동약자지원재단 설립 등) ① 노동약자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지원하기 위해 노동약자지원재단(이하 "재단"이라 한다) 을 설립한다.
 -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- 1. 노동약자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
 - 2. 노동약자의 복지 증진 및 생활 안정 지원
 - 3. 노동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
 - 4. 노동약자의 계약과 관련된 분쟁의 상담·협의·조정 등 지원
 - 5. 노동약자의 이해 대변 및 소통 활성화
 - 6. 노동약자 공제사업의 관리 운영
 - 7.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위탁하는 사업
 - ③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,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 - ④ 재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 - ⑤ 재단은 노동약자를 지원하는 다른 기관과의 연계 또는 위탁을 통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
 -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

- 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⑦ 국가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- ⑧ 재단은 「기부금품의 모집·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재단의 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접수할 수있다.
- ⑨ 제2항제6호에 따른 노동약자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「보험업법」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- ⑩ 그 밖에 재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0조(관계 기관 등의 협조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각종계획 및 정책의 수립·시행, 실태조사, 경력관리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
- 제21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②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법인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제22조(조례의 제정)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노동약자의 지원과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